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금융권금리가 저이율로 유동됨에 따라 상환이자율 조정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5%에서 연3%로 조정 (안 제4조제4항)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건은 자활의욕이 있으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제4조(융자금액등) 제4항의 일반융자금 이자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 이같은 조치는 금융권 금리가 저이율로 유동됨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의 상환이자율을 2% 낮추어 영세민에 대한 수혜의 폭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1996. 3. 1 조례 제88호]

<개정 2000.12.14 조례 제370호>

제4조(융자금액등) ②일반융자금은 1세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③학자금 융자금은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년 3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년100만원을 한도로 융자를 실시하고 3년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년 5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제3항의 학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 공히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을 하지 않을 시는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연 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시 제출된 2003년도 기금운영특별 회계에 따르면 '03년도 예산규모는 총180,100천원으로 금년 보다 39,400천원이 늘어난 규모로, 융자대상은 ①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③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④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⑤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에 대해 가구당 일반융자금은 5백만원이하, 학자금은 년 1백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해 주며 상환조건은 3년거치 3년 또는 4년균등 상환토록 되어있음.

○ 여기서 기금운영상 중요한 부분은 융자를 받으려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초기생업자금을 융자받으려 하는 경우는 상환능력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또한 이자율을 낮출 경우 생업자금 신청자는 늘겠지만 수혜대상을 선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